

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(제2023-174호)
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(정기적성검사)를 위반하여
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
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○공고기간 : 2023.11.21. ~ 2023.12.04.

○대상자 (인적사항)

일련 번호	통보번호	성 명	면허번호	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일	조 건 부 취소일자	적용법조
1	2023-02013	노*주	14-12-6104**-**	2022.12.31.	2024.01.03.	

※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
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대전광역시경찰청

면허계(교통계) 운전면허 행정처분

2023 년 11 월 21 일

대전광역시경찰청장